

III.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(안) 보고

□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지도·감독 등)
- 서울의료원 정관 제40조(정관의 변경)

○ 필요성

- 보건복지부의 「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 구축 사업 안내」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에 따른 조직 정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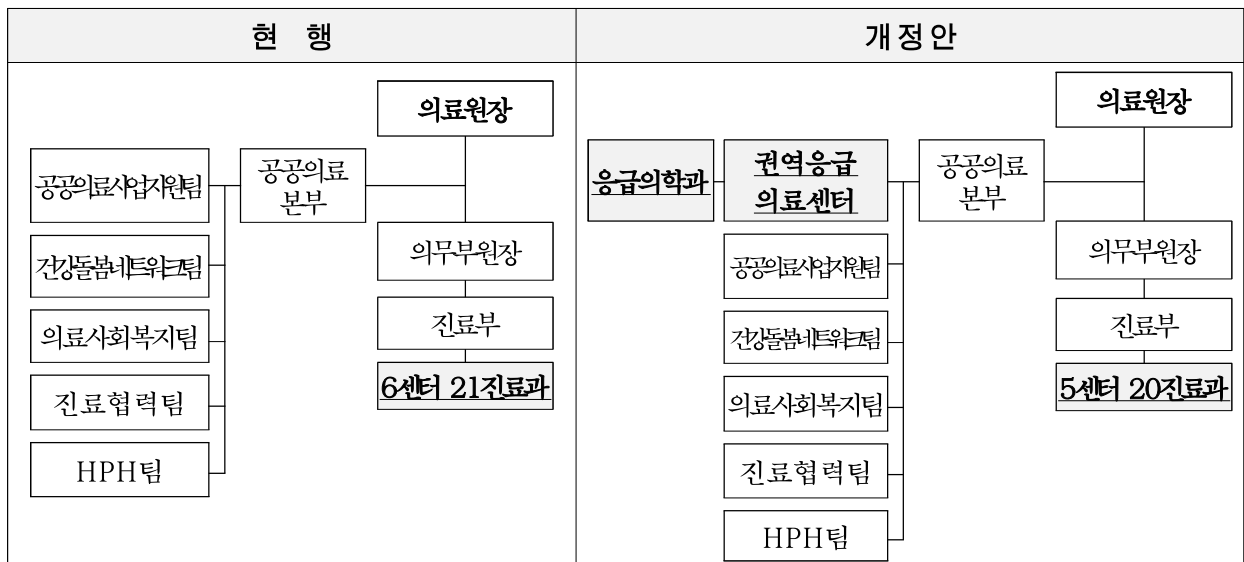
※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보건의료 정부지정센터를 공공의료본부 산하에 배치

□ 주요내용

○ ‘응급의료센터’를 ‘권역응급의료센터’로 부서명 개정

○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학과 부서 배치 조정

- 의무부원장 산하 진료부 소속 ⇒ 원장 직속 공공의료본부 소속



□ 향후계획

- 이사회 정관 개정(안) 의결 : '22.2월
- 서울특별시시장 승인 및 정관 개정(안) 시행 : '22.3월

작성자 기획조정실장: 김정희 ☎2276-7015 기획경영팀장: 김학진 ☎7050 담당: 한경선 ☎7042

붙임.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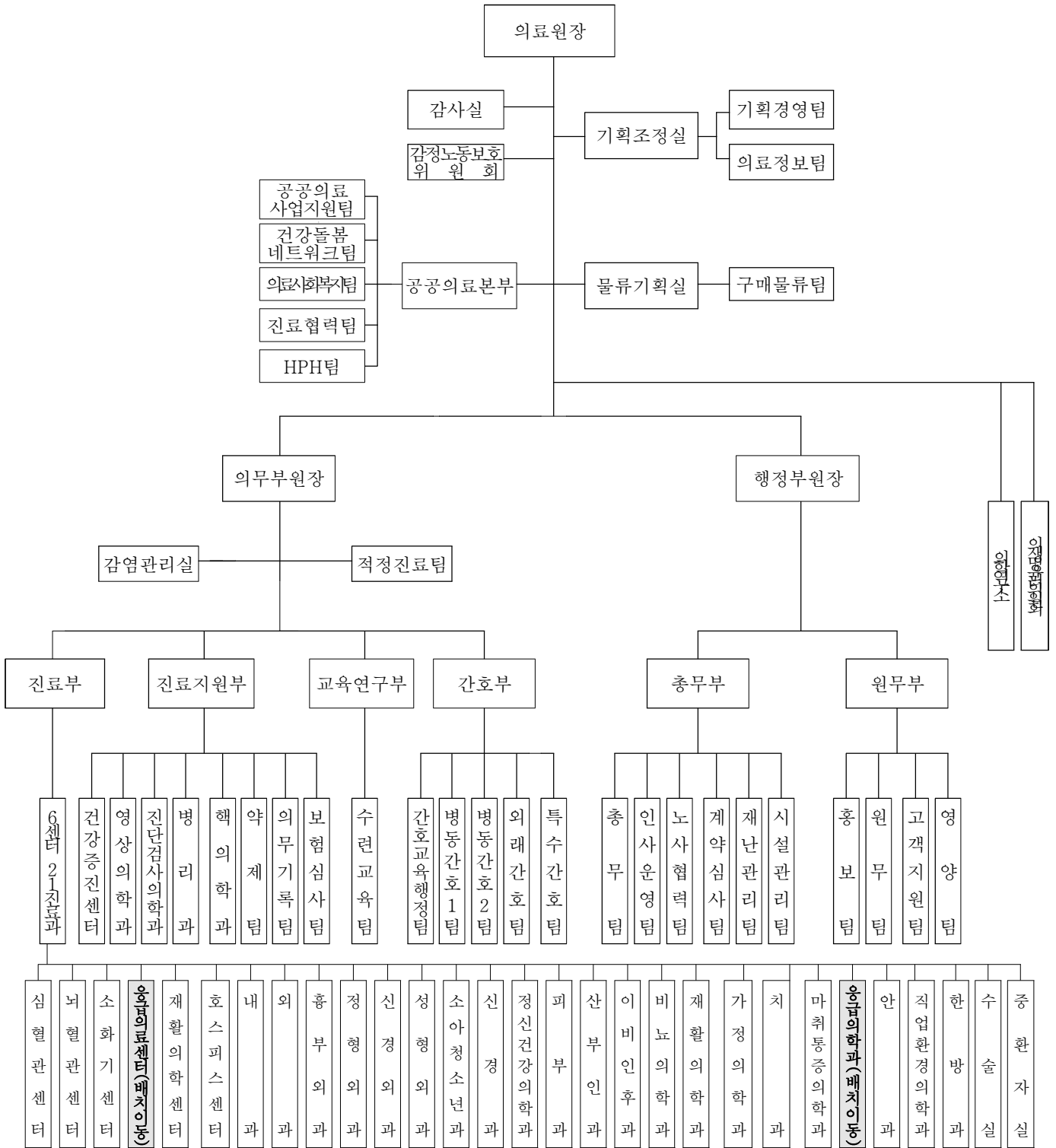
정관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1조(조직 및 정원) ① 의료원의 조직은 6부 4실 1본부, 7센터 25진료과 28팀, 1연구소, 2위원회로 <u>별표 1</u>과 같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41조(조직 및 정원) ① 의료원의 조직은 6부 4실 1본부, 7센터 25진료과 28팀, 1연구소, 2위원회로 <u>별표 1</u>과 같다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< 개 정 전 >

기 구 표

(6부 4실 1본부, 7센터 25진료과 28팀, 1연구소, 2위원회)



< 개 정 후 >

기 구 표

(6부 4실 1본부, 7센터 25진료과 28팀, 1연구소, 2위원회)

